|  |  |  |
| --- | --- | --- |
| **환경 감찰방법**  환경보호부령부령 제21호  《환경 감찰방법》은 2012년 7월 4일, 환경보호부 부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하는 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보호부 부장  2012년 7월 25일  **제1장 총 칙**  **제1조** 환경감찰 업무를 강화, 규범화 하고, 환경감찰의 대오 건설을 강화하며, 환경감찰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등 유관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환경감찰 업무의 실제정황을 고려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환경감찰이라 칭하는 것은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환경보호법률, 법규, 규장과 기타 규범성 문건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행정 집법(执法)을 뜻한다.  **제3조** 환경감찰은 아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교육과 징계의 상호결합  (2) 엄격한 법 집행과 자발적 준법 인도의 상호결합  (3) 확실한 증거, 합법적인 절차, 명확한 범죄성질 규정, 합리적인 처리  (4) 공정, 공개적, 고효율  **제4조** 환경보호부는 전국환경감찰 업무에 대해 일괄적으로 감독관리를 시행한다.  현급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해당 행정구역의 환경감찰 업무를 책임진다.  각 급 환경보호 주관부문에 소속된 환경감찰기구(이하 “환경감찰기구”)는 구체적인 환경감찰 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환경감찰기구는 동 급 환경보호 주관부문에 대해 책임을 지며, 상급 환경감찰기구의 업무지침과 감독을 받는다.  각급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환경감찰기구 지도를 강화하고 건전한 업무협조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한편, 환경감찰기구가 필요로 하는 업무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6조** 환경감찰기구의 주요임무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환경보호법률, 법규, 규장과 기타 규범성 문건의 집행을 감독  (2) 오염원의 오염물 배출정황, 오염방지시설 운영정황, 환경보호 행정허가 집행정황, 건설항목 환경보호 법률 법규의 집행정황 등의 현장 감독검사  (3) 자연보호구역, 가축/가금류 사육 오염방지 등 생태와 농촌환경보호 법률 법규 집행 정황의 현장 감독검사  (4) 오염물 배출 신고등기, 오염물 배출비 심사결정과 징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책임짐  (5) 환경위법행위의 조사처리  (6) 환경오염과 생태훼손에 대한 신고, 고발의 진상조사, 업무이관 처리, 감독관리.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확정한 직책분담에 따라 환경오염과 생태훼손 분쟁 중재처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책임짐  (7) 갑작스런 환경사건에 대한 응급처리  (8) 엄중한 환경오염과 생태훼손 문제에 대한 감독조사 진행  (9) 직책에 따라 환경사찰(稽查)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짐  (10) 법률, 법규와 규범성 문건이 규정한 기타 직책  **제2장 환경감찰기구와 인원**  **제7조** 각급 환경감찰기구는 환경감찰국으로 명명(命名)할 수 있다. 성급(省级), 시급(市级), 현급(县级) 환경감찰기구는 각각 환경감찰본부(总队), 환경감찰지부(支队), 환경감찰대대(大队)로 명명할 수 있다.  현급 환경감찰기구의 분지(파출)기구와 향진급(乡镇级) 환경감찰기구의 명칭은 환경감찰중대(中队) 또는 환경감찰소(所)로 명명할 수 있다.  **제8조** 환경감찰기구의 설치와 인원구성은 해당 행정구역 범위의 규모, 경제사회 발전수준, 인구규모, 오염원 수량과 분포, 생태보호와 환경 법규집행 임무량 등 요인에 따라 과학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9조** 환경감찰기구의 업무경비는 국가유관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주관부문의 예산에 산입하고 본(本) 급 재정이 보장해야 한다.  **제10조** 환경감찰기구의 사무용 건물, 법 집행 업무용 건물 및 법 집행 차량, 조사 및 증거채취 기자재 등 법 집행 장비는 국가환경감찰표준화 건설 및 검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환경감찰기구의 법 집행 차량은 통일적인 환경감찰 법 집행 표식을 도색해야 한다.  **제11조** 환경감찰기구의 업무인원(이하 “환경감찰인원”) 채용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의 유관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12조**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업무수요에 근거하여 환경감찰 훈련 5년 규획과 연도계획을 제정해야 하며, 등급 및 유형별 훈련을 조직 전개해야 한다.  시급, 현급 환경감찰기구의 주요 책임자와 성급 이상 환경감찰인원의 직업훈련은 환경보호부가 일괄적으로 조직한다. 기타 환경감찰인원의 직업훈련은 성급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조직한다.  환경감찰인원이 훈련에 참가한 정황은 환경감찰인원의 심사, 임직의 주요 근거로 삼는다.  **제13조** 현장 법 집행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감찰인원이 현장검사를 진행할 때, 법에 따라 아래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유관 장소에 진입하여 조사, 샘플채취, 모니터링, 사진촬영, 녹음, 녹화, 기록본을 제작할 권리  (2) 유관 자료를 열람, 복제할 권리  (3) 유관인원과 상담, 의견청취를 진행하여 관련사항에 대한 설명과 유관자료 제공을 요구할 권리  (4) 위법행위의 정지 또는 교정을 명령할 권리  (5) 행정처벌의 간이절차를 적용하고 현장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권리  (6) 법률, 법규, 규장이 규정한 기타 조치  현장검사 진행 시, 현장 법 집행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감찰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중국환경감찰 법 집행증>>등 행정 법 집행 증명문건을 제시하고 신분을 밝혀야 하며, 법 집행을 설명해야 한다.  **제14조** 현장 법 집행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감찰인원은 《중국환경감찰 법 집행증》을 소지해야 한다.  직업훈련에 참가하고 시험을 거쳐 훈련합격증서를 취득한 환경감찰인원에 대해 심사비준 후 《중국환경감찰 법 집행증》을 발급한다. 《중국환경감찰 법 집행증》의 발급, 사용,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환경보호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15조** 각 급 환경감찰기구는 건전한 보안유지 제도를 제정하고, 보안유지 조치를 완벽히 하며, 보안유지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고, 전문 인원을 지정하여 보안유지 일상 업무를 관리해야 한다.  **제16조** 환경감찰인원은 유관 청렴기율과 요구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17조** 각급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건전한 환경감찰인원 심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업무에 특출하거나 뚜렷한 업적이 있는 환경감찰인원에 대해 표창과 장려한다. 환경감찰 업무 중 위법, 기율위반 행위를 한 환경감찰 인원은 법에 의거하여 처분하고 《중국환경감찰 법 집행증》을 일시적으로 압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장 환경감찰 업무**  **제18조** 환경감찰기구는 관할 행정구역 환경보호 업무, 오염원 수량, 유형, 관리권한 등에 근거하여 환경감찰 업무의 연도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환경감찰 업무 연도계획은 동급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비준한 후 시행하며, 상급 환경감찰기구에 송부해야 한다.  **제19조** 환경감찰기구는 환경감찰업무 연도계획에 근거하여 현장검사를 조직한다. 현장검사는 규정대로 처리하거나 중점조사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20조** 오염물 배출자가 신고한 배출 오염물의 종류, 수량에 대해서는 환경감찰기구가 법에 따라 책임지고 심사결정을 진행한다.  **제21조** 환경감찰기구는 오염물 배출비 징수표준과 심사결정한 오염물 종류, 수량에 따라 오염물 배출자에게 오염물 배출비를 책임지고 징수한다.  오염물 배출비의 감면, 면제, 지급연기 신청은 환경감찰기구가 법에 의거하여 심사결정한다.  **제22조** 환경보호 법률, 법규와 규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위법행위인에게 개정 또는 기한 내 개정을 명령하고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시행한다.  **제23조** 환경보호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엄중하게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조성한 환경위법 사안에 대해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유관부문에게 기한 내 처리를 명확하게 요구하고 독촉할 수 있으며 대중에게 처리결과를 공개한다.  **제24조** 환경감찰기구는 환경행정 법 집행을 조직 실시한 후, 환경행정 처벌, 행정명령 등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법 집행을 책임지고 감찰, 감독한다.  **제25조** 기업사업단위가 엄중하게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심각한 생태훼손을 조성한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문 또는 환경감찰기구는 단위 책임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기한 내 개정을 독촉할 수 있다.  환경보호목표 임무가 미완성 되었거나 중대하고 심각한 환경 사안이 발생한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문 또는 환경감찰기구는 하급 지방 인민정부 책임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지방인민정부에게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고 개정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개선 건의를 제의할 수 있다.  **제26조** 법에 의거하여 수리된 안건이 본 기관 관할에 속하는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규정된 시한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환경보호 주관부문 관할에 속하나 본 기관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수리안건의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관할권을 가진 환경보호 주관부문에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해야한다. 환경보호 주관부문 관할에 속하지 않으나 안건을 수리한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관할권을 가진 기관에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해야한다.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사법기관과의 협력과 협조를 강화해야 하며, 업무수요에 근거하여 기타부문과 공동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다.  **제27조** 인접한 행정구역의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환경감찰 법 집행 정보를 상호 통보하고, 소통과 협력,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동일한 구역, 유역 내의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연합검사와 법집행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환경감찰기구는 정보통계를 강화하고 특정주제 보고, 정기보고, 통계보고표 등의 형식으로 동급 환경보호 주관부문과 상급 환경감찰기구에 본 행정구역의 환경감찰 업무정황을 보고해야 한다.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법에 따라 환경감찰 유관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28조** 상금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하급 환경보호 주관부문의 환경감찰 업무 중 법에 따른 직책이행, 직권행사, 기율준수 정황에 대해 사찰을 진행해야 한다.  **제29조** 환경감찰 업무 중 형성된 오염원 감찰, 건설항목 검사, 오염물 배출 신고등기, 오염물 배출비 징수, 행정처벌 등 자료는 적시에 정리를 진행하고 서류철을 만들어 분류보관해야 한다.  **제30조** 상급 환경감찰기구는 하급 환경보고 주관부문의 환경감찰 업무에 대해 연도 심사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제4장 부 칙**  **제31조** 환경보호 주관부문에 소속된 기타 기구는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확정한 직책분담에 따라, 본 방법을 참고하여 그 직책 범위 내의 환경감찰 업무를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32조** 본 방법은 환경보호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3조** 본 방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감리 업무 잠행방법》([91]환감자제338호), 《환경감리 업무제도(시행)》(환감[1996]888호), 《환경감리 업무절차(시행)》(환감[1996]888호), 《환경감리 정무 공개제도》(환발[1999]15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  | **环境监察办法**  环境保护部令部令第21号  《环境监察办法》已于2012年7月4日由环境保护部部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2年9月1日起施行。  环境保护部部长  二○一二年七月二十五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加强和规范环境监察工作，加强环境监察队伍建设，提升环境监察效能，根据《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等有关法律、法规，结合环境监察工作实际，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环境监察，是指环境保护主管部门依据环境保护法律、法规、规章和其他规范性文件实施的行政执法活动。  **第三条**　环境监察应当遵循以下原则：  　 （一）教育和惩戒相结合；  　 （二）严格执法和引导自觉守法相结合；  　 （三）证据确凿，程序合法，定性准确，处理恰当；  　 （四）公正、公开、高效。  **第四条**　环境保护部对全国环境监察工作实施统一监督管理。  　　县级以上地方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的环境监察工作。  　　各级环境保护主管部门所属的环境监察机构（以下简称“环境监察机构”），负责具体实施环境监察工作。  **第五条**　环境监察机构对本级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并接受上级环境监察机构的业务指导和监督。  　 各级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加强对环境监察机构的领导，建立健全工作协调机制，并为环境监察机构提供必要的工作条件。  **第六条**　环境监察机构的主要任务包括：  　 （一）监督环境保护法律、法规、规章和其他规范性文件的执行；  　（二）现场监督检查污染源的污染物排放情况、污染防治设施运行情况、环境保护行政许可执行情况、建设项目环境保护法律法规的执行情况等；  　（三）现场监督检查自然保护区、畜禽养殖污染防治等生态和农村环境保护法律法规执行情况；  　（四）具体负责排放污染物申报登记、排污费核定和征收；  　（五）查处环境违法行为；  　（六）查办、转办、督办对环境污染和生态破坏的投诉、举报，并按照环境保护主管部门确定的职责分工，具体负责环境污染和生态破坏纠纷的调解处理；  　 （七）参与突发环境事件的应急处置；  　 （八）对严重污染环境和破坏生态问题进行督查；  　 （九）依照职责，具体负责环境稽查工作；  　 （十）法律、法规、规章和规范性文件规定的其他职责。  **第二章　环境监察机构和人员**  **第七条**　各级环境监察机构可以命名为环境监察局。省级、设区的市级、县级环境监察机构，也可以分别以环境监察总队、环境监察支队、环境监察大队命名。  县级环境监察机构的分支（派出）机构和乡镇级环境监察机构的名称，可以命名为环境监察中队或者环境监察所。  **第八条**　环境监察机构的设置和人员构成，应当根据本行政区域范围大小、经济社会发展水平、人口规模、污染源数量和分布、生态保护和环境执法任务量等因素科学确定。  **第九条**　环境监察机构的工作经费，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列入环境保护主管部门预算，由本级财政予以保障。  **第十条**　环境监察机构的办公用房、执法业务用房及执法车辆、调查取证器材等执法装备，应当符合国家环境监察标准化建设及验收要求。  　 环境监察机构的执法车辆应当喷涂统一的环境监察执法标识。  **第十一条**　录用环境监察机构的工作人员（以下简称“环境监察人员”），应当符合《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的有关规定。  **第十二条**　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根据工作需要，制定环境监察培训五年规划和年度计划，组织开展分级分类培训。  　 设区的市级、县级环境监察机构的主要负责人和省级以上环境监察人员的岗位培训，由环境保护部统一组织。其他环境监察人员的岗位培训，由省级环境保护主管部门组织。  　 环境监察人员参加培训的情况，应当作为环境监察人员考核、任职的主要依据。  **第十三条**　从事现场执法工作的环境监察人员进行现场检查时，有权依法采取以下措施：  　 （一）进入有关场所进行勘察、采样、监测、拍照、录音、录像、制作笔录；  　 （二）查阅、复制相关资料；  　 （三）约见、询问有关人员，要求说明相关事项，提供相关材料；  　 （四）责令停止或者纠正违法行为；  　 （五）适用行政处罚简易程序，当场作出行政处罚决定；  　 （六）法律、法规、规章规定的其他措施。  　 实施现场检查时，从事现场执法工作的环境监察人员不得少于两人，并出示《中国环境监察执法证》等行政执法证件，表明身份，说明执法事项。  **第十四条**　从事现场执法工作的环境监察人员，应当持有《中国环境监察执法证》。  　 对参加岗位培训，并经考试取得培训合格证书的环境监察人员，经核准后颁发《中国环境监察执法证》。《中国环境监察执法证》颁发、使用、管理的具体办法，由环境保护部另行制定。  **第十五条**　各级环境监察机构应当建立健全保密制度，完善保密措施，落实保密责任，指定专人管理保密的日常工作。  **第十六条**　环境监察人员应当严格遵守有关廉政纪律和要求。  **第十七条**　各级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建立健全对环境监察人员的考核制度。  　对工作表现突出、有显著成绩的环境监察人员，给予表彰和奖励。对在环境监察工作中违法违纪的环境监察人员，依法给予处分，可以暂扣、收回《中国环境监察执法证》；涉嫌构成犯罪的，依法移送司法机关追究刑事责任。    **第三章　环境监察工作**  **第十八条**　环境监察机构应当根据本行政区域环境保护工作任务、污染源数量、类型、管理权限等，制定环境监察工作年度计划。  　 环境监察工作年度计划报同级环境保护主管部门批准后实施，并抄送上一级环境监察机构。  **第十九条**　环境监察机构应当根据环境监察工作年度计划，组织现场检查。现场检查可以采取例行检查或者重点检查的方式进行。  **第二十条**　对排污者申报的排放污染物的种类、数量，环境监察机构负责依法进行核定。  **第二十一条**　环境监察机构应当按照排污费征收标准和核定的污染物种类、数量，负责向排污者征收排污费。  　 对减缴、免缴、缓缴排污费的申请，环境监察机构应当依法审核。  **第二十二条**　违反环境保护法律、法规和规章规定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责令违法行为人改正或者限期改正，并依法实施行政处罚。  **第二十三条**　对违反环境保护法律、法规，严重污染环境或者造成重大社会影响的环境违法案件，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提出明确要求，督促有关部门限期办理，并向社会公开办理结果。  **第二十四条**　环境监察机构负责组织实施环境行政执法后督察，监督环境行政处罚、行政命令等具体行政行为的执行。  **第二十五条**　企业事业单位严重污染环境或者造成严重生态破坏的，环境保护主管部门或者环境监察机构可以约谈单位负责人，督促其限期整改。  　 对未完成环境保护目标任务或者发生重大、特大突发环境事件的，环境保护主管部门或者环境监察机构可以约谈下级地方人民政府负责人，要求地方人民政府依法履行职责，落实整改措施，并可以提出改进工作的建议。  **第二十六条**　对依法受理的案件，属于本机关管辖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按照规定的时限和程序依法处理；属于环境保护主管部门管辖但不属于本机关管辖的，受理案件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移送有管辖权的环境保护主管部门处理；不属于环境保护主管部门管辖的，受理案件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移送有管辖权的机关处理。  　 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加强与司法机关的配合和协作，并可以根据工作需要，联合其他部门共同执法。  **第二十七条**　相邻行政区域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相互通报环境监察执法信息，加强沟通、协调和配合。  　 同一区域、流域内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加强信息共享，开展联合检查和执法活动。  　 环境监察机构应当加强信息统计，并以专题报告、定期报告、统计报表等形式，向同级环境保护主管部门和上级环境监察机构报告本行政区域的环境监察工作情况。  　 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依法公开环境监察的有关信息。  **第二十八条**　上级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对下级环境保护主管部门在环境监察工作中依法履行职责、行使职权和遵守纪律的情况进行稽查。  **第二十九条**　对环境监察工作中形成的污染源监察、建设项目检查、排放污染物申报登记、排污费征收、行政处罚等材料，应当及时进行整理，立卷归档。  **第三十条** 上级环境监察机构应当对下一级环境保护主管部门的环境监察工作进行年度考核。    **第四章　附 则**  **第三十一条**　环境保护主管部门所属的其他机构，可以按照环境保护主管部门确定的职责分工，参照本办法，具体实施其职责范围内的环境监察工作。  **第三十二条**　本办法由环境保护部负责解释。  **第三十三条**　本办法自2012年9月1日起施行。《环境监理工作暂行办法》（〔91〕环监字第338号）、《环境监理工作制度（试行）》（环监〔1996〕888号）、《环境监理工作程序（试行）》（环监〔1996〕888号）、《环境监理政务公开制度》（环发〔1999〕15号）同时废止。 |